

[Redacted]

화해권고결정

사 건 [Redacted] 이혼 및 양육자 지정

원 고 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[Redacted]

사 건 본 인 [Redacted]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정사항

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
2. 원고와 피고 사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가. 원고는 피고에게 [REDACTED]까지 [REDACTED]을 지급한다.

나. 원고와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내 가재도구는 원고가 소유하고,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[REDACTED] 대출채무는 원고가 변제한다.

다.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. 즉,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,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.

라.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.

3.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

4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[REDACTED]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,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.

5.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가. 일정: 월 2회, 매월 둘째, 넷째 주 토요일 12:00부터 일요일 12:00까지, 세부적인 시간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정한다.

나. 기타:

1)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,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.

2) 원고는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,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3) 면접교섭의 일정과 구체적인 인도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·변경할 수 있다.

다만,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늦어도 면접교섭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.

6.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, 재산분할,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,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(민사, 형사, 가사 등 모두 포함)도 제기하지 않는다(부제소합의).

7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8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